

장학금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계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0장에 의거하여 장학금 지급의 합리적인 운영과 절차를 규정하여 학생들의 면학을 권장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4., 2019. 9. 1.)

제2조(장학금의 배정)

1. 장학금의 배정은 납입등록금 추정액과 고정 장학 및 특별장학생 수를 고려하여 배정한다.(개정 2018. 10. 4.)
2. 조교 장학금의 배정인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원 등록학생 수를 고려하여 배정한다.(개정 2018. 10. 4.)

제3조(장학생 선발대상) 장학생 선발대상은 대학원 재학생 또는 신입학 예정자(재입학 예정자 포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 2018. 8. 1., 2018. 10. 4.)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국위를 선양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3. 이공계지원자, 외국인, 학교법인 계명대학교가 설치·경영하는 각급 기관의 교직원과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학교법인 계성학원이 설치·경영하는 각급 기관의 교직원,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각급 기관의 교직원, 언론인, 공무원, 교직자, 목회자 등
4. 대학원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는 자
5. 학생학술연구장학 선발 기준에 적합한 자
6. 우리 대학교 학사 또는 석사과정 졸업생으로 대학원에 입학한 자
7. 가계가 곤란한 자
8. 기타 총장 또는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

제3조의2(장학 종류) (삭제 2018. 10. 4.)

제4조(장학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① 일반대학원의 장학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8. 1., 2018. 10. 4., 2019. 9. 1., 2020. 3. 1.)

② 특수대학원의 장학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9. 9. 1.)

제5조(장학사정) ① 장학생은 장학금 배정액 범위 내에서 선발되며,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단, 간호학과와 의학과는 장학생 사정은 각 학과에, 조교장학생 선발은 교원인 사정에, 근로장학생 선발은 운영부서에 위임한다.(개정 2018. 8. 1., 2018. 10. 4., 2019. 4. 3.)

② 교외장학생은 장학금 기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며 대학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8. 8. 1., 2018. 10. 4.)

제6조(등록금 초과 중복지급 제한) 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지급할 수 없으며 장학금액의 합이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개정 2018. 10. 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와 관계없이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개정 2018. 8. 1., 2018. 10. 4.)

1. 특별장학에 해당하는 장학금
2. 연구장학 중 학술연구장학금

3. 면학장학 중 면학특성화장학금

4. 교외장학 중 생활비, 경비, 포상, 학업장려 등에 해당하는 장학금

제7조(기타 연구장학금 지급) (삭제)(2018. 8. 1.)

제8조(연구지도비) 학술연구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생의 지도교수에게는 학술연구논문지도비를 대학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2018. 10. 4.)

제9조(예외) 삭제

부 칙

1. 이 내규는 1973년 4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규는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내규는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내규는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내규는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내규는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내규는 198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내규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내규는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내규는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내규는 200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개정내규는 2003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개정내규는 200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8. 이 개정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개정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개정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개정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이 개정내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이 개정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이 개정내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이 개정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6. 이 개정내규는 2016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27. 이 개정내규는 201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8. 이 개정내규는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9. 이 개정내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 이 개정내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31. 이 개정내규는 201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32. 이 개정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 이 개정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1호와 제2호의 희망장학에 대한 시행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대학원 장학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신설 2018. 10. 4., 2019. 4. 3., 2019. 9. 1., 2020. 3. 1.)

1. 2020학년도 2학기 이후 입학생

장학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입학성적우수장학	<p>■ 기본자격: 신입학 전형 성적이 우수한 자</p> <p>1. 비사진리장학: 등록금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교 학부 비사스칼라 장학 수혜자로 졸업한 자 중 다음의 학위과정별 요건을 충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과정, 통합과정 입학생: 대학교 총평균평점이 4.0(4.5만점) 이상인 자 · 박사과정 입학생: 대학교 총평균평점이 4.0(4.5만점) 이상이며, 석사과정 총평균평점 95점 이상인 자 - 유지조건: 직전학기 6학점(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9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95점 이상을 취득 <p>2. 입학성적우수장학: 수업료 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학 전형 성적이 우수한 자
성적우수장학	<p>■ 기본자격: 직전학기 6학점(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9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95점 이상을 취득한 자</p> <p>1. 성적정의장학: 수업료 50%</p> <p>2. 성적사랑장학: 수업료 30%</p>
면학장학	<p>■ 기본자격: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p> <p>1. 면학정의장학: 수업료 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5급 이상 재직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재직자 - 언론인(대외협력처에서 추천한 자) - 국위를 선양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p>2. 계명복지정의장학: 수업료 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교 또는 법인산하 기관에서 재직 중인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원, 무기계약직원) 또는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 - 계성학원 또는 신명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p>3. 인문100년장학: 수업료 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교 학사과정에서 인문100년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p>4. 면학(이공계)장학: 수업료 4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교 학사 또는 석사과정 졸업생으로서 자연공학계열 학과에 입학한 자 <p>5. 면학(인문사회)장학: 수업료 3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교 학사 또는 석사과정 졸업생으로서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입학한 자 <p>6. 면학장려장학: 수업료 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학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공공기관(단체) 재직자, 언론인 포함]

장학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7. 면학특성화장학: 수업료 20% - 면학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 중 면학증진을 위해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
행복장학	■ 기본자격: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가족의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 1. 행복진리장학: 수업료 100%, 입학금 100% - 의학 및 간호학 연구진리장학 대상자 중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2. 행복정의장학: 수업료 50%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 면학(이공계)장학, 계명복지정의장학, 인문100년장학 대상자 중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3. 행복인문사회장학: 수업료 40% - 면학(인문사회)장학 대상자 중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4. 행복복지장학: 수업료 40% - 행복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예산범위 내에서 소득분위가 낮은 자를 우선 선발) 5. 행복사랑장학: 수업료 30% - 행복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
외국인장학	■ 외국인학생 학사운영 지침을 적용함
연구장학	1. 학술연구장학: 일정액 - 연구과제 또는 연구지원사업 등에서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자 2. 의학 및 간호학 연구장학: 일정액 - 의학과, 간호학과에서 연구 및 면학의욕 고취, 연구지원인력 활용을 위해 선발된 자
특별장학	1. 총장특별장학: 일정액 - 학교의 명예를 높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총장이 인정한 자 2. 장애인도우미장학: 일정액 - 장애인도우미로 선발된 자 3. 계약학과특별장학: 일정액 -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해 개설되는 학과의 면학증진을 위해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 4. 조교장학: 일정액 - 조교로 선발된 자 5. 우수학과특별장학: 일정액 - 우수학과로 선정된 학과의 학생 중 면학장학 기본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과장이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6. 근로장학: 일정액 -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장학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7. 비사학술원장학: 비사학술원 운영 규정 제4조(선발)제2항에 의해 선발된 자 - 등록금 100% - 기숙사비, 연구비, 학기 교환학생 장학금 등 - 해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학비 일부 지원(석사학위 취득 후 우리 대학교와 복수 또는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해외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에 한함) 8. 희망장학: 일정액 - 가족의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
교외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부금(기탁)장학 등: 일정액 - 장학금 기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 기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자를 장학생 선발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2. 2019학년도 1학기에서 2020학년도 1학기 입학생

장학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입학성적우수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자격: 신입학 전형 성적이 우수한 자 1. 비사진리장학: 등록금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교 학부 비사스칼라 장학 수혜자로 졸업한 자 중 다음의 학위 과정별 요건을 충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과정, 통합과정 입학생: 대학교 총평균평점이 4.0(4.5만점) 이상인 자 · 박사과정 입학생: 대학교 총평균평점이 4.0(4.5만점) 이상이며, 석사과정 총평균평점 95점 이상인 자 - 유지조건: 직전학기 6학점(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9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95점 이상을 취득 2. 입학성적우수장학: 수업료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학 전형 성적이 우수한 자
성적우수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자격: 직전학기 6학점(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9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95점 이상을 취득한 자 1. 성적정의장학: 수업료 50% 2. 성적사랑장학: 수업료 30%
면학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자격: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 1. 계명복지정의장학: 수업료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교 또는 법인산하 기관에서 재직 중인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원, 무기계약직원) 또는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 - 계성학원 또는 신명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2. 이공계정의장학: 수업료 50%

장학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교 학사 또는 석사과정 졸업생으로서 자연공학계열 학과에 입학한 자 3. 인문100년장학: 수업료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교 학사과정에서 인문100년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4. 면학정의장학: 수업료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5급 이상 재직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재직자 - 언론인(대외협력처에서 추천한 자) - 국위를 선양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5. 인문사회장학: 수업료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교 학사 또는 석사과정 졸업생으로서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입학한 자 6. 면학장려장학: 수업료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학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공공기관(단체) 재직자, 언론인 포함) 7. 면학특성화장학: 수업료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학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 중 면학증진을 위해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
행복장학	<p>■ 기본자격: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적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가족의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복진리장학: 수업료 100%, 입학금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 및 간호학 연구진리장학 대상자 중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2. 행복정의장학: 수업료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 이공계정의장학, 인문100년장학, 계명복지정의장학 대상자 중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3. 행복인문사회장학: 수업료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학장학(인문사회장학) 대상자 중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4. 행복복지장학: 수업료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예산범위 내에서 소득분위가 낮은 자를 우선 선발) 5. 행복사랑장학: 수업료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
외국인장학	<p>■ 외국인학생 학사운영 지침을 적용함</p>
연구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술연구장학: 일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제 또는 연구지원사업 등에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2. 의학 및 간호학 연구장학: 일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과, 간호학과에서 연구 및 면학의욕 고취, 연구지원인력 활용을 위해 선발된 자
특별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장특별장학: 일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명예를 높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총장이 인정한 자 2. 장애인도우미장학: 일정액

장학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도우미로 선발된 자 3. 계약학과특별장학: 일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해 개설되는 학과의 면학증진을 위해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 4. 조교장학: 일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교로 선발된 자 5. 우수학과특별장학: 일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학과로 선정된 학과의 학생 중 면학장학 기본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과장이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6. 근로장학: 일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7. 비사학술원장학: 비사학술원 운영 규정 제4조(선발)제2항에 의해 선발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100% - 기숙사비, 연구비, 학기 교환학생 장학금 등 - 해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학비 일부 지원(석사학위 취득 후 우리 대학교와 복수 또는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해외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에 한함) 8. 희망장학: 일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
교외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부금(기탁)장학 등: 일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기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 기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자를 장학생 선발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3. 2018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

장학 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입학성적우수 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자격: 신입학 전형 성적이 우수한 자 1. 비사진리장학: 등록금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교 학부 비사스칼라 장학 수혜자로 졸업한 자 중 다음의 학위 과정별 요건을 충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과정, 통합과정 입학생: 대학교 총평균평점이 4.0(4.5 만점) 이상인 자 · 박사과정 입학생: 대학교 총평균평점이 4.0(4.5 만점) 이상이며, 석사과정 총평균평점 95점 이상인 자 - 유지조건: 직전학기 6학점(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9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95점 이상을 취득 2. 입학성적우수장학: 수업료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학 전형 성적이 우수한 자
성적우수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자격: 직전학기 6학점(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9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95점(백분율) 이상을 취득한 자 1. 성적정의장학: 수업료 50%

장학 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2. 성적사랑장학: 수업료 30%
면학장학	<p>■ 기본자격: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명복지정의장학: 수업료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교 또는 법인산하 기관에서 재직 중인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원, 무기계약직원) 또는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 - 계성학원 또는 신명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2. 이공계정의장학: 수업료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교 학사 또는 석사과정 졸업생으로서 자연공학계열 학과에 입학한 자 3. 인문100년장학: 수업료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학년도 2학기 이후 입학생 중 우리 대학교 학사과정에서 인문100년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4. 면학정의장학: 수업료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5급 이상 재직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재직자 - 언론인(대외협력처에서 추천한 자) - 국위를 선양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5. 인문사회장학: 수업료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학년도 2학기 이후 입학생 중 우리 대학교 학사 또는 석사과정 졸업생으로서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입학한 자 6. 면학사랑장학: 수업료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학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공공기관(단체) 재직자, 언론인, 교직원 포함) 7. 면학특성화장학: 수업료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학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 중 면학증진을 위해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
행복장학	<p>■ 기본자격: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가족의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복진리장학: 수업료 100%, 입학금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 및 간호학 연구진리장학 대상자 중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2. 행복정의장학: 수업료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 이공계정의장학, 인문100년장학, 계명복지정의장학 대상자 중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3. 행복인문사회장학: 수업료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학장학(인문사회장학) 대상자 중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4. 행복사랑장학: 수업료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학사랑장학 대상자 중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외국인장학	■ 외국인학생 학사운영 지침을 적용함
연구장학	1. 학술연구장학: 일정액

장학 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제 또는 연구지원사업 등에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2. 의학 및 간호학 연구장학: 일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과, 간호학과에서 연구 및 면학의욕 고취, 연구지원인력 활용을 위해 선발된 자
특별장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장특별장학: 일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명예를 높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총장이 인정한 자 2. 장애인도우미장학: 일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도우미로 선발된 자 3. 계약학과특별장학: 일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해 개설되는 학과의 면학증진을 위해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 4. 조교장학: 일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교로 선발된 자 5. 우수학과특별장학: 일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학과로 선정된 학과의 학생 중 면학장학 기본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과장이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6. 근로장학: 일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7. 희망장학: 일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
교외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부금(기탁)장학 등: 일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기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 기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자를 장학생 선발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별표 2] 특수대학원 장학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1. 교육대학원(개정 2019. 9. 1.)

장학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성적우수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자격: 신입학 전형 성적이 우수하거나, 재학 중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교양영어 과목 포함) 없이 평균 90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성적사랑장학: 수업료 30%
복지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자격: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교양영어 과목 포함)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 1. 계명복지정의장학: 수업료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교 및 법인산하 재직 중인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원, 무기 계약직) 및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 - 계성학원 및 신명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
행복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복정의장학: 수업료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2. 행복사랑장학: 수업료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적은 순으로 선발 - 인원이 부족할 경우 소득분위 8분위까지 선발 가능
특별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직교원특별장학: 수업료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기간제, 계약직 제외), 장학사, 연구사 - 기본자격: 직전학기에 6학점 이상 신청하고 과목실격(교양영어 과목 포함) 없이 평균 85점 이상 취득한 자(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 2. 총장특별장학: 일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 중에서 총장이 인정한 자
면학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교육대학원의 발전 및 면학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유가 있는 자 1. 면학진리장학: 수업료 100% 2. 면학사랑장학: 수업료 30% 3. 면학특성화장학: 수업료 20%
교외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부금(기탁)장학 등: 일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기탁자(장학재단 또는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가 정하는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

2. 경영대학원(개정 2019. 9. 1.)

장학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성적우수장학	<p>MBA학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자격: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90점 이상을 취득한 자(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

장학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1. 성적진리장학: 수업료 100% 2. 성적정의장학: 수업료 50% 3. 성적사랑장학: 수업료 30% GMBA학과 ■ 기본자격: 직전학기 9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90점 이상을 취득한 자(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 제한 없음) 1. 글로벌MBA100장학: 수업료 100% 2. 글로벌MBA70장학: 수업료 70% 3. 글로벌MBA50장학: 수업료 50% 4. 글로벌MBA30장학: 수업료 30%
면학장학	■ 기본자격: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 1. 계명복지정의장학: 수업료 50% - 우리대학교 또는 법인산하 기관에서 재직 중인 교직원 또는 가족 - 계성학원 또는 신명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2. 면학정의장학: 수업료 50% - 공공기관 5급 이상 재직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재직자 -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3. 면학사랑장학: 수업료 30% - 면학장학 기본자격 충족한 자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자 - 면학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공공기관 재직자, 언론인 포함)
외국인장학	외국인학생 학사운영 지침을 적용함
특별장학	1. 조교장학: 일정액 - 조교로 선발된 자 2. 근로장학: 일정액 -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3. 정책대학원(개정 2019. 9. 1.)

별표 1의3 일반대학원 장학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2018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을 따른다. 다만 행복장학에 대한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은 아래와 같다.

장학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행복장학	■ 기본자격: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가족의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 1. 행복정의장학: 수업료 50%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 면학장학(이공계정의장학) 대상자 중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 2. 행복인문사회장학: 수업료 40% - 면학장학(인문사회장학) 대상자 중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 3. 행복복지장학: 수업료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예산범위 내에서 소득분위가 낮은 자를 우선 선발) 4. 행복사랑장학: 수업료 30% - 행복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
--	--

4. 연합신학대학원(개정 2019. 9. 1.)

별표 1의 일반대학원 장학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을 따른다.

5. 예술대학원(개정 2019. 9. 1.)

장학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입학성적우수 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자격: 입학성적(총점)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된 자 1. 성적정의장학: 수업료 50% 2. 성적사랑장학: 수업료 30%
성적우수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자격: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90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에서 선발된 자 1. 성적정의장학: 수업료 50% 2. 성적사랑장학: 수업료 30%
면학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자격: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 1. 계명복지정의장학: 수업료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교 또는 법인산하 기관에서 재직 중인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원, 무기계약직원) 또는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 - 계성학원 또는 신명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2. 면학장학: 국위를 선양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학정의장학: 수업료 50% - 면학사랑장학: 수업료 30%
행복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자격: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가족의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 1. 행복정의장학: 수업료 50% 2. 행복사랑장학: 수업료 30%
외국인장학	외국인학생 학사운영 지침을 적용함
교외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부금(기탁)장학 등: 일정액 - 장학금 기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6. 스포츠산업대학원(개정 2019. 9. 1.)

장학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성적우수장학	<p>■ 기본자격: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90점(백분율) 이상을 취득한 자(성적순으로 선발)</p> <p>1. 성적정의장학: 수업료 50%</p> <p>2. 성적사랑장학: 수업료 30%</p>
면학장학	<p>■ 기본자격: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80점 이상을 취득한 자(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학과장이 추천하는 자를 심의하여 선발)</p> <p>1. 계명복지정의장학: 수업료 50%</p> <p>- 우리 대학교 또는 법인산하 기관에서 재직 중인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원, 무기계약직원) 또는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p> <p>- 계성학원 또는 신명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p> <p>2. 면학정의장학: 수업료 50%</p> <p>3. 면학사랑장학: 수업료 30%</p>
행복장학	<p>■ 기본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가계곤란자, 가족의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p> <p>1. 행복정의장학: 수업료 50%</p> <p>2. 행복사랑장학: 수업료 30%</p>
교외장학	<p>■ 지정기부금(기탁)장학 등: 일정액</p> <p>- 장학금 기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p>

7. 유아교육대학원(개정 2019. 9. 1.)

장학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성적우수장학	<p>■ 기본자격: 신입학 전형 성적이 우수하거나, 재학 중 직전학기에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교양영어 과목 포함) 없이 평균 90점 이상을 취득한 자</p> <p>• 성적사랑장학: 수업료 30%</p>
복지장학	<p>■ 기본자격: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교양영어 과목 포함)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p> <p>• 계명복지정의장학: 수업료 50%</p> <p>- 우리 대학교 및 법인산하 재직 중인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원, 무기 계약직) 및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p> <p>- 계성학원 및 신명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p>
행복장학	<p>1. 행복정의장학: 수업료 50%</p> <p>-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p> <p>2. 행복사랑장학: 수업료 30%</p> <p>- 세대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적은 순으로 선발</p> <p>- 인원이 부족할 경우 소득분위 8분위까지 선발 가능</p>

장학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특별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장특별장학: 일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 중에서 총장이 인정한 자
면학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유아교육대학원의 발전 및 면학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유가 있는 자 1. 면학사랑장학: 수업료 30% 2. 면학특성화장학: 수업료 20%
교외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부금(기탁)장학 등: 일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기탁자(장학재단 또는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가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

8. 융합공학대학원(개정 2019. 9. 1.)

장학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성적우수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자격: 직전학기 대학원 교과목을 6학점이상 신청하고 실격 과목이 없이 평균 90점(백분율) 이상을 취득한 자 1. 진리장학: 수업료 100% 2. 정의장학: 수업료 50% 3. 사랑장학: 수업료 30%
면학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자격: 직전학기 대학원 교과목을 6학점이상 신청하고 실격 과목이 없이 평균 85점(백분율) 이상을 취득한 자 1. 면학진리장학: 수업료 100% 2. 면학정의장학: 수업료 50% 3. 면학사랑장학: 수업료 30%
행복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자격: 가계곤란자로서 소득분위 7분위 이내인 자 1. 행복진리장학: 수업료 100% 2. 행복정의장학: 수업료 50% 3. 행복사랑장학: 수업료 30%

9. 글로벌창업대학원(개정 2019. 9. 1.)

별표 1의3 일반대학원 장학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2018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을 따른다. 다만 행복장학에 대한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은 아래와 같다.

장학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행복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자격: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가족의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 1. 행복정의장학: 수업료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 면학장학(이공계정의장학) 대상자 중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

장학종류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2. 행복인문사회장학: 수업료 40% - 면학장학(인문사회장학) 대상자 중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 3. 행복복지장학: 수업료 40% - 행복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예산범위 내에서 소득분위가 낮은 자를 우선 선발) 4. 행복사랑장학: 수업료 30% - 행복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